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9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김선민・박은정・김준형

조 국・이해민・신장식

서왕진 • 박상혁 • 김원이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 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 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중요 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 외에 새로운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제11호, 제50조제2항·제4항 및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이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신·증축 사업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타당 성재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의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 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 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_ 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 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 · 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 -----전문기관(이하 이 조 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 -----. 다만, 제50조제2항 설>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의 지정취소 및 전문기관에 대

- 1. ~ 8.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10. (생 략) <신 설>
 - ③ ~ ⑥ (생 략)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략)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 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 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

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
과 같음)
②
1. ~ 10. (현행과 같음)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 사
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 사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업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사 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1. ~ 5. (생략)
- ③ (생략)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 전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 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 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 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u></u> 다만, 제38조
제2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결
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
⑤ (현행과 같음)
네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
련 자료의 공개) <u>기획재정부장</u>
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	
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u>.</u>